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로서의 언론조정, 이렇게 해볼까요?

최승재 변호사(법학박사), 서울제8중재부 중재위원



I. 들어가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명칭은 중재위원회인데 통계를 보면 중재(arbitration) 건수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조정(mediation)사건을 담당하고 있다.¹⁾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으로 직무를 하면서 1년이면 100건 이상의 조정사건을 담당하고 진행하게 된다. 이런 사건이 한 해 한 해 누적되면서 이제 수 백 건의 경험을 가지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언론에 대한 이해도 많이 늘었고, 조정에 대한 이해도 늘었다. 하지만 많이 부족하고 여전히 새로운 사건들에 대해서 조사관들로부터 메일을 받을 때마다 늘 고민하고 있다.²⁾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조정기구들이 있고 이 기구들의 조정은 '조정'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서로 차별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은 행정

1) 조정은 2020년 3924건, 2021년 4278건, 2022년 3175건인 반면, 중재는 2019년 이후 없는 것으로 통계상 확인된다. URL: https://www.pac.or.kr/kor/pages/?p=217&b=B_1_6&bn=3050&m=read&nPage=1&cate=PD01&i=TITLE&s= (2023. 8. 4. 최종검색)

2) 필자는 개인적으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도 하지만 법원조정위원,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인으로서 중재 외에 조정업무도 진행하고, 법원연계조정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에서의 분쟁조정도 하면서 다양한 기관에서 대체적 분쟁해결수단(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인 조정에 조정위원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다. 한편 변호사로서 민사조정법상 법원조정, 법원에서 조정회부 한 사건의 조정은 물론 위 기관 외에도 공정거래조정원에서의 조정 등 여러 기관에서의 조정에도 대리인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형 조정기구의 경우에는 집단적 조정절차를 가지고 있다. 이런 집단조정은 환경분쟁의 특성을 감안한 것이다. 낙동강 폐놀 방류사건을 조정으로 처리한다고 보면 같은 쟁점을 가지고 있는 다수의 피해자들이 있을 것인데, 이런 사건들은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조정을 하여 처리하기 보다는 집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효율적일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환경분쟁조정 경우에는 집단적 조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의 특성을 감안한 조정에서의 노하우와 일반적인 조정에서의 노하우를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한다. 물론 필자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점이 있을 수 있다. 골프에서 스윙의 정답은 없지만 정석은 있다는 격언이 있다. 조정에서도 이는 마찬가지라고 본다. 하지만 이런 노하우의 공유과정을 통해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이 더 발전할 수 있다는 믿음에 이 글을 쓴다. 아래에서는 조정에서 공통되는 노하우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서의 특징을 감안한 노하우를 기술한다.

II. 조정 노하우 나눔

1. 철저한 사전 준비: '조정은 예술, 중재는 과학'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이라고 하면 조정(調停)과 중재(仲裁)가 대표적이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이 있다. 환경분쟁조정 경우에는 알선과 재정 등을 조정(調整)이라는 표제 하에 조정(調停)과 중재(仲裁)에 더해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중재위원회는 조정과 중재를 두고 있다. 이 둘은 비교해보면 조정은 예술(art)이고, 중재는 과학(science)이다. 조정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인 언론사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들의 분쟁에서 최대한 양자가 의견일치를 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내는 작업이 중요하다.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법리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신청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점에서 이 사건 조정에 이르게 되었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 언론보도와 사건기록을 보면서 생각하여 볼 필요가 있는데, 이 과정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는 법원조정도 마찬가지이기 전에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의 경우에는 특히 감정적으로 다친 신청인들을 보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고민을 사전에 해 두는 것이 조정성립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물론 이런 사전준비는 조정기일에서도 중요하다. 신청인이 중재부에서 사건을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중재부가 사건을 잘 파악하고 있고, 또 사실관계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대해 질문을 하면 조정분위기가 훨씬 적극적으로 변한다. 함께 중재위원을 했던 위원들 중에서 A위원이 이 점에서는 탁월했다. 사건에서 쟁점이 되

는 사실관계를, 기록으로 제출된 것에 더해서 공부하고 조사를 해 와서 당사자들에게 확인을 했다. 처음에는 중재위원들이 뭘 알까 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거나, 잘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조정에 대응하는 당사자가 있다. 이 경우 중재위원이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조정성립에 기여한다. 만일 조정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중재위원들이 자신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들을 때 '전문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이런 점에서 철저한 사전준비는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인상을 긍정적으로 만든다.

2. '선입견 없이' 기록 보고 당사자 주장 듣기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을 담당하는 중재위원이 되었다는 것은 언론계나 학계, 실무계에서 전문성이나 대표성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점은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으로서 조정이 가지는 장점이다. 원래 조정은 동네의 촌로(村老)가 마을에서 발생한 분쟁을 오랜 연륜과 경험, 그리고 지혜를 바탕으로 해결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이런 점에서 언론에 대하여 잘 아는 전문가들이 언론관련분쟁에 대해서 각자의 주장을 듣고 각자의 사정을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적절한 권고를 하는 것은 조정이 가지는 미덕이다.

조정은 사실 중재와의 관계에서 보면 당사자들에 대해서 결론을 구속시킬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점에서 미약한 분쟁해결수단이다. 그럼에도 조정이 가지는 강점은 당사자들을 수궁시키는 전문성과 경험, 그리고 지혜에 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권고에 불과할 수 있는 조정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신속성과 유연한 대처와 같은 조정특유의 장점과 언론중재법이 가지는 여러 특징들이 결합되어 조정성립에 이르기도 하지만 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중재위원의 역량이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중재위원이 조심하여야 하는 것이 선입견이다. 물론 인간인 이상 우리는 선입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선입견이 나쁜 것도 아니다. 선입견은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고 틀이다. 우리들은 모두 삶 속에서 학습한 데이터를 통해서 나름의 시각 내지 정보판단의 틀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틀은 대개의 경우 바르게 작동한다. 확률적인 정확성을 어느 정도 담보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결코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은 무결(無缺)하지 않다. 이 점을 인정하고 조정심리에 임해야 한다. 선입견을 가지게 되면 당사자들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게 된다. 그렇게 되면 사건을 기계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이는 조정의 미덕이라고 할 수 있는 유연한 분쟁해결을 저해한다.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되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 그래야 확률적 오류 가능성을 회피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분쟁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다.

3. 사전준비회의를 최대한 활용하여 조정위원들의 의견 경청하기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부는 5인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단독조정, 법원조정센터의 조정 등과 비교해볼 때 구성면에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언론조정의 경우 중재부장을 중심으로, 각 위원들이 사전회의를 통해 사건을 파악하고 조정을 진행하면서 당해 사건을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지 고민하고 사건에 임하게 된다. 물론 사건을 하다 보면 조정기일에서의 심리는 애초에 예상했던 방향과 같이 흘러가지는 않는다. 그렇기에 사전준비회의를 잘 활용해야 한다.

필자의 경험으로 이 자리는 단순히 조사관의 브리핑을 듣고 심리방향에 대해서만 논의하는 것이 아니었다. 기록을 미리 보고 왔지만 놓치고 있었던 점들을 보고 듣게 된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엄청난 장점은 언론계에서 최고로 인정받았던 분들이 위원이 된다는 것이다. 위원들은 각자 경험과 지혜들을 통해서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이 있다.

조정 경우는 판결과 다른 점이 있다. 판결은 판결서에 적힌 결론이 법원이라는 이름으로 법이 부여한 권위를 타고 당사자를 바로 구속한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법률에 의해서 정해진 권위(권한)에 의해서 당사자가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중재위원이 원하는 결론을 수긍하여야 조정이 성립되는 과정이다. 이런 점에서 위원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듣다 보면 사건에 대한 이해도는 물론 사건을 어떻게 진행하여야 할지도 보이는 경우가 있다.

물론 조정심리는 중재부장이 진행하지만, 사전회의를 통해서 5인의 위원들이 각자 어떤 역할 분담을 하고 어떤 식으로 조정기일에서의 질문을 해나가고 의견을 제시하여 권유한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할 것인가를 정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사전준비회의는 정말 중요한 절차이다.

4. 부제소특약에 대한 고지 등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을 하다 보면 조정을 그 자체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절차로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 애초에 조정의사가 없는 사건이 있다. 남소(濫訴)로 보이는 경우이다. 물론 이런 사건도 최선을 다해서 조정을 하려고 할 필요가 있지만 완고하게 조정의사가 없거나 대리인이 이미 조정하지 않도록 지침을 가지고 온 경우에는 조정을 오래 끄는 것이 양당사자에게 모두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경험적으로 하나의 조정사건을 1시간 이상 2시간 가까이 진행하는 경우 노력을 많이 하면 할수록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가 정비례는 아니더라도 많았던 것 같다. 통계분석을 한 것은 아니고 감(感)이다. 역으로 이런 시간을 쓰면서까지 조정에 시간을 들인다는 것은 양당사자가 조정의사가 있을 때이며, 이런 당사자들은 중재부가 좋은 대안을 내면 조정을 할 생각이 있는 것 같다. 특히 자극적인 기사 제목에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조정신청을 하고, 언론도 이미

보도된 기사의 제목에 굳이 해당 표현을 계속 고집할 필요가 없는 경우, 처음에는 감정이 앞서서 시간이 걸리지만 점차 중재부의 진심이 전달되면 조정성립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반대로 애초에 안 될 사건에 중재부도 당사자들도 시간을 쓸 필요가 없다고 본다. 우리는 무제한의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다. 시간을 잘 안배해야 출석요구를 받고 기다리는 당사자들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이럴 경우 신청인의 조정의사가 없는 것 같으면 부제소특약의 존재를 고지하면서 언론중재위원회의 표준적인 조정권고문안이 합의를 하게 되면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로 나아갈 수 없도록 하는 것임을 알려주면 더 이상 조정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직접적으로 이런 절차 없이 바로 '신청인은 조정할 의사가 없지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적절한 질문은 아닌 것 같다.

피신청인인 언론사의 경우 대리권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고 본다. 중재부가 이렇게 권고를 하면 권고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의사를 확인하면서 대리권이 있는지를 재차 확인하면 일정 이상의 권고안에 대해서는 수권이 없다는 의사를 제시할 기회를 주게 되어 무익한 전개를 막을 수 있었던 것 같다. 최선을 다해서 조정권고를 하여도 당사자들이 우리의 노력에 반응을 하지 않아 부득이한 상황이 될 때 즉, 중국적으로 조정불성립이 될 상황에서 확인을 하는 방법의 하나일 수 있다고 본다.

5. 속행기일의 활용

법원에서의 절차에 익숙한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출석한 경우 경험적으로 당연히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속행을 할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다. 물론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익숙한 대리인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피신청인이 되는 언론사의 대리인인 변호사들보다는 신청인 대리인인 변호사에서 더 많이 발견된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은 실무상 속행기일을 잡지 않고 증거조사도 법원과 같은 수준으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는 조정을 통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분쟁해결이라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의 특성을 감안하면 타당한 절차진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속행기일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한 때가 있다. 반대로 당사자들이 원해도 속행기일을 잡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때도 있다고 본다. 앞의 경우는 당사자 등 일방이 조정문안을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은 경우이다. 합의는 거의 성립되었지만 조정문안에 대해서 특히 신청인이 의견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때에는 중재부에 문안을 작성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시간을 끌고 있는 것보다는 속행기일을 잡아서 문안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2주 정도 뒤의 빠른 기일을 잡아서 차회기일에 문안을 확정하여 조정을 성립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반면, 분명 조정기일 시작 전에 대리권을 확인할 때는 대리권이 있다고 하면서도 정작 조정이 거의 성립된 상태에서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채 대리인인 자신이 결정할 수 없다고 하는 때에는 오히려 잠시 정회(停會)를 하고 당사자 본인에게 연락을 해 대리권을 확인하여 마무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럴 경우 속행기일을 잡아달라고 하기도 하는데, 애초에 전권을 위임받고 왔다고 한 대리인의 언행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외에도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출석을 요구하게 되므로 가급적 속행대신 정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III. 나가며

이 글에서 언급한 노하우 외에도 조정진행과정에서 필자가 생각하고 실행하는 여러 방안들이 있다. 그러나 제한된 지면으로 인해 이를 모두 공유하지 못하는 점은 다음 기회를 위한 여백으로 남겨두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학술적으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의 특징에 대해서 논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기관에서 다수의 조정사건을 조정위원으로서 또는 대리인으로서 다루면서 이 과정에서 알게 된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하였다. 물론 노하우라고 하지만 실제 들어보면 별 것이 아니라고 느낄 수 있는 고수들이 다수 있으실 것이고, 어떤 것들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나 세상일은 원래 당연한 것, 기본적인 것을 지키는 것에서 탁월함이 나오는 법이라는 점에서 부족하지만 경험에 근거한 생각들을 공유하고자 하였다. 물론 필자가 노하우라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이 점에 대해서도 기탄없는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한다. 